

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7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4. 4.

발의자 : 전현희 · 임종성 · 조정식  
기동민 · 서영교 · 김경진  
윤관석 · 윤소하 · 김정우  
김상희 · 박주민 · 박홍근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‘파리협정’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 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 1. ~ 4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 -----  -----  -----  ----.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5.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